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1호)

제 안 설 명



2022. 1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 성 연

(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의 의무 게시사항이나,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변경된 중개보수표를 게시하지 않는 중개사무소가 있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과 같은 중개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에 중개보수표를 제작·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피

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